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10. 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9월 28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9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90회 임시회 제4차위원회 (2002. 10.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가. 제안이유

자치역량 강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구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면서 국·소·담당관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함. (안 제3조)

○ 행정관리국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광고물관리 업무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함. (안 제4조)

○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할하고, 산업위생과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지역경제과에 지방공

기업·취업지원 사무를 신설하며, 위생관련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한편,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를 청소환경과로 통폐합 조정함. (안 제6조)

○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개편하면서 행정관리국의 광고을 관련 사무 및 건설교통국의 가로정비 사무를 흡수 조정하는 한편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여 건설교통국의 공원·녹지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조정함. (안 제7조)

○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재난관리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공원 및 녹지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로 이관하고, 국의 과별 건재순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변경 조정함. (안 제8조)

○ 보건소에 생활복지국의 위생관련업무 등을 이관받아 신설함. (안 제11조)

○ 본 조례의 개정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례들을 개정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함. (안 부칙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포구의 행정기구를 부서 총수는 현행대로 5국 1소 1담당관 24과 (보건소 3개과 포함)를 유지하면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폐합 또는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생활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여 가정복지, 여성, 청소년 및 학교환경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또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현행 위생업무를 제외한 산업과의 일부업무와 공기업(마포개발공사)에 관한 업무 및 환경과의 연료가스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

였으며 현행 청소과와 환경과를 청소환경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및 청소환경과가 생활복지국 산하 부서가 되겠음.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현행 건축과의 지구단위계획업무와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및 주민자치과의 광고물업무 등을 흡수하여 도시관리과로 통폐합하였으며 현행 토목과의 공원, 녹지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공원녹지과를 신설함으로써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 산하 부서가 되겠음.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현행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소관 업무가 각 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건설교통국 과별 건설순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조정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생활복지국의 위생관련 업무인 식품·공중 위생업무와 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은 보건소로 이관하여 현행 보건행정과가 통폐합될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행조례들을 다른 조례의 개정형식으로 일괄 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복지행정,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의 구정 역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3개과를 신설하고 산업위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보건행정과 6개과를 통폐합하였으며 사회복지과를 분리하는 등 현행 부서 총수 (5국 1소 1담당관 24과)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지난 '99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는 승인 절차없이도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동 개정안이 확정 시행된 후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마포개발공사 관련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고유업무와 위탁업무로 구분되어 고유업무인 시장업무는 신설되는 지역경제과 공기업팀에서 관장할 것이며, 위탁업무중 마포문화체육센터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관리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할 것임.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장) : 과거 기구개편시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을 업무과중으로 우려하였으나 지금 와서 다시 분할하는데,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과중해 지는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조병하 행정관리국장) : 산업위생과 업무중 보건소로 이관되는 업무를 제외하면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2.9.2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역량 강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구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면서 국·소·담당관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함.(안 제3조)

나. 행정관리국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광고물관리 업무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함.(안 제4조)

다.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할하고, 산업위생과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지역경제과에 지방공기업·취업지원 사무를 신설하며, 위생관련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한편,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를 청소환경과로 통폐합 조정함.(안 제6조)

라.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개편하면서 행정관리국의 광고물 관련 사무 및 건설교통국의 가로정비 사무를 흡수 조정하는 한편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여 건설교통국의 공원·녹지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조정함.(안 제7조)

마.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치수방제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재난관리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공원 및 녹지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로 이관하고, 국의 과별 간제순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변경 조정함.(안 제8조)

바. 보건소에 생활복지국의 위생관련업무 등을 이관받아 신설함.(안 제11조)

사. 본 조례의 개정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례들을 개정조례의 부칙에서 다른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0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직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2.8.14 대통령령 제17707호) 제10조제1항

4. 조례안 : “ 별 첨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

나.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완료함.

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마포구”를 “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감사담당관을 둔다”를 “감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감사·조사·민원조사 및 재난관리 업무 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제18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제19호 내지 제27호를 제18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중 제34호를 제33호로 한다.

27.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중 제4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제5호 내지 제15호를 제4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민새·사업소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중 “산업위생과·환경과 및 청소행정과”를 “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 및 청소환경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관 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7.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9.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0.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시장의 지도·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3. 물가 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4. 농업·수산업 및 축산업에 관한 사항
15. 지방공기업(마포개발공사)의 예산·결산안의 승인 총괄,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16. 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연료(가스류 포함) 판매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19. 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0.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취업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2.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24.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27.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9.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30.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1. 물관리에 관한 사항
32.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3.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34.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5.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36.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7.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중 “도시개발과·건축과 및 지적과”를 “도시관리과·건축과·지적과 및 공원녹지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호 내지 제24호를 제13호 내지 제26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1호, 제12호 및 제27호 내지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11. 환경순찰 확인, 가로장애물 제거 등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 12.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 27.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 28.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29. 조수보호 등에 관한 사항
- 30.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 31.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 32.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 33. 생활체육·건전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중 “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방재과·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 및 치수과”로 하고,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 대책에 관한 사항
- 3.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 4.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 6. 방치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7.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 8.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9.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 10.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 11.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관한 사항
- 12.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3.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4. 도로·지하도·하천·구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16. 건설업에 관한 사항
17.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집행
1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21.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22.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항
23. 보상(무허가 건물 보상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24.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25. 하수도·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유지관리
26.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27.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28.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9. 분류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
3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중 “소관사무를”을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 업무 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분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지·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파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민자치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비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법무업무담당주사”를 “법무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주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각각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담당주사”로 각각 한다.

⑤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외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사회업무담당주사”를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산업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각각 “지역경제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산업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유통담당주사”로 한다.

⑩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본문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산업위생과장”을 각각 “보건위생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3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환경과장”을 “청소환경과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활용업무담당주사”를 “재활용담당주사”로 하고, 제9조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⑬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행정과장”을 “청소환경과장”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치수방제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하수업무담당주사”를 “하수담당주사”로 하며, 제7조제1항중 “3개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⑮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각각 재해별 해당국장(풍수해, 실해:건설교통국장, 지진 등:행정관리국장), 재해별 해당과장(풍수해:치수방제과장, 실해:토목과장, 지진 등:치수방제과장)”을 “각각 재해별 해당국장 및 감사담당관(풍수해, 실해:건설교통국장, 지진 등:감사담당관), 재해별 해당과장(풍수해:치수과장, 실해:토목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1호중 “관할구역안”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으로 하고, 제6조제3항본문중 “위원은”을 “위원은 구의 감사담당관을 포함한”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해당국장)”을 “(해당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⑯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⑰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중 제5호를 삭제하며,
제6조제2항중 “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를 “교통시설담당주사”로 한다.

2. 도시관리과장

⑱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⑲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보건지도과장”을 “지역보건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마포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둔다.</p> <p>②부구청장 밑에는 <u>감사담당관을 둔다.</u></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구-----</p> <p>-----</p> <p>-----</p> <p>-----</p> <p>②-----<u>감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감사·조사·민원조사 및 재난관리업무 등으로 한다.</u></p>
<p>제4조(행정관리국) ①(생략)</p> <p>②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17.(생략)</p> <p>18. <u>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유동 광고물 제외)</u></p> <p>19.~27.(생략)</p> <p>(신설)</p> <p>28.~32.(생략)</p> <p>33. <u>병사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u></p> <p>34.(생략)</p>	<p>제4조(행정관리국)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1.~17.(현행과 같음)</p> <p>(삭제)</p> <p>18.~26.(현행 제19호 내지 제27호와 같음)</p> <p>27. <u>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p> <p>28.~32.(현행과 같음)</p> <p>(삭제)</p> <p>33.(현행 제34호와 같음)</p>
<p>제5조(기획재정국) ①(생략)</p> <p>②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생략)</p> <p>4. <u>공기업을 예산·결산의 승인 및 경영 평가에 관한 사항</u></p> <p>5.~15.(생략)</p>	<p>제5조(기획재정국)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1.~3.(현행과 같음)</p> <p>(삭제)</p> <p>4.~14.(현행 제5호 내지 제15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16.~18.(생략)</p> <p>19. 주민세·사업소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15. 주민세·사업소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p> <p>16.~18.(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6조(생활복지국) ①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산업위생과·환경과 및 청소년정책과를 둔다</p> <p>②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p> <p>2.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p> <p>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p> <p>4.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p> <p>5. 노인복지·유아교육·가정의례에 관한 사항</p> <p>6.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p> <p>7. 소관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8. 근로청소년 복지·요보호 아동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p> <p>9. 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10. 시장의 지도·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11. 불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p> <p>12. 중소기업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사항</p>	<p>제6조(생활복지국) ①-----</p> <p>-----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 및 청소년정책과-----</p> <p>②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p> <p>2.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p> <p>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p> <p>4. 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5. 소관 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6.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p> <p>7.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p> <p>8. 유아교육·가정의례에 관한 사항</p> <p>9.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p> <p>10.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p> <p>11.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12. 시장의 지도·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13. 농업·수산업 및 축산업에 관한 사항	13. 물가 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4.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는 제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농업·수산업 및 축산업에 관한 사항
15. 공중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지방공기업(마포개발공사)의 예산·결산안의 승인 총괄, 경영평가 및 지도감독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16.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17. 연료(가스류 포함) 판매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19. 소음·진동·약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19. 가스 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0.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0.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1. 취업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2.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3. 분뇨 및 정화조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2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24.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24.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연료(가스류 포함)판매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6.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27.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7.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29.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9.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30.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1. 물관리에 관한 사항
	32. 분뇨 및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3.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31.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p> <p>32.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p> <p>33. 공중변소의 설치·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34. 청소 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35.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p> <p>36.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p>	<p>34.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p> <p>35.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p> <p>36.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37.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제7조(도시관리국) ①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 및 지적과를 둔다.</p> <p>②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10.(생략)</p> <p>(신설)</p> <p>(신설)</p> <p>11.~24.(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7조(도시관리국) ①</p> <p>도시관리과·건축과·지적과 및 공원녹지과를-----</p> <p>②-----</p> <p>1.~10.(현행과 같음)</p> <p>11. 환경순찰 확인, 가로장애물 제거 등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p> <p>12.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p> <p>13.~16.(현행 제11호 내지 제24호와 같음)</p> <p>27. 공원·녹지관리의 총괄</p> <p>28.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p> <p>29. 조수보호 등에 관한 사항</p> <p>30.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p> <p>31.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p> <p>32.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p> <p>33. 생활체육·건강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8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토목과·치수방재과·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p> <p>②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골재 채취업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에 관한 사항 4.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항 6.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7. 유동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집행 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11.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2.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1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4. 조수보호등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16.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17.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18. 생활체육·건전생활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20. 하수도·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유지관리 21.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p>제8조(건설교통국) ①-----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p> <p>②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 대책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우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6. 방치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 우수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9.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10.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1.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위·수탁 관리에 관련 사항 12.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3.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4.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16. 건설업에 관한 사항 17.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집행 1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22.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p> <p>23.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p> <p>24. 분류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p> <p>25. 도시방재 종합 대책 계획 수립 및 총괄조성</p> <p>26.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p> <p>27. 재난관리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28. 물관리업무</p> <p>2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30.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p> <p>31.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p> <p>32.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p> <p>33.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p> <p>3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p> <p>35. 방치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p> <p>36.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p> <p>37.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p> <p>38.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p> <p>39.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지도등에 관한 사항</p> <p>40.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p> <p>41.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p>	<p>2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p> <p>21.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p> <p>22.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항</p> <p>23. 보상(무허가 건물 보상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p> <p>24.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p> <p>25. 하수도·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유지관리</p> <p>26.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p> <p>27.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p> <p>28.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p> <p>29. 분류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p> <p>3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제11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제11조(업무) —————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을 —————</p>